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3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3. 23.

판 결 선 고 2021.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02,733,260원, 지방교육세 51,584,750원, 농어촌특별세 485,756,460원, 가산세 92,001,390원의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②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902,733,260원 중 451,366,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지방교육세 51,584,750원 중 25,792,3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485,756,460원, 가산세 92,001,39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③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92,001,3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위 제1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위 제2예비적 청구도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모두 주위적 청구와 별도의 독립한 청구라 할 수 없으나, 소장의 청구취지 대로 위 ②, ③도 이곳에 기재하여 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 원고는 구 [redacted]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폐지되어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redacted]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redacted]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redacted]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 [redacted]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2. 4. 16. 설립된 법인이다.

○ [redacted]장관은 2008. 10. 2. 당시 시행되던 도시개발법에 따라 [redacted]시 B리, C리, D리 일원 3,801,471㎡를 'E'라는 명칭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원고를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 원고는 2010. 6. 16. E에서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자회사로 주식회사 F[1](이

1) 설립 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G'이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하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H지구 지정

[redacted]특별자치도지사는 2012. 7. 4. 구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에 따라 E를 H지구로, 원고를 그 개발기관으로,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을 H지구 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 경과

○ 원고는 2012. 11. 29. F, 미국 버몬트 주 소재 학교인 I 등과 사이에, E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F는 국제학교를 운영·관리하고, 원고는 F에 국제학교 부지 및 건물[2]을 임대하며, I는 F에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력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4. 9. 25. E 내에 위치한 [redacted]시 J 학교용지 26,560.3㎡, K 학교용지 47,894.2㎡, L 학교용지 27,716.7㎡(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의 이사회는 2015. 9. 24. 'M'라는 명칭의 국제학교(이하 '이 사건 국제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F에 임대하고, F는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 F는 2015. 10. 26. [redacted]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를 부지로 하여 이 사건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국제학교 건물 신축공사 착공까지의 경과

2) 건물은 별도로 설립할 개발회사를 통하여 F에 신축·임대할 예정이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신축·임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국제학교에 관하여 2016. 3월부터 2017. 8월까지 이 사건 학교용지에 교과시설, 체육·공연시설, 행정시설, 기숙사 등의 건물(이하 '이 사건 학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 원고는 2015. 11. 11. [redacted]시장에게 이 사건 학교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6. 1. 20.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2016. 5월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마. 국제학교 건물 취득 및 취득세 등 기한 후 신고·납부

○ 원고는 2017. 9. 28. [redacte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2017. 11. 29. 아래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일괄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 및 가산세 합계 1,532,075,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납부세액(원)			가산세(원)		합계(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902,733,260	51,584,750	485,756,460	90,273,320	1,728,070	1,532,075,860

○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이 사건 학교건물의 취득일(사용승인일)인 2017. 9. 28. 당시 시행되던 구 [redacted]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8. 7.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취득 시 조례'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한 70% 감면을 적용한 금액이다.

○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학교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8. 2. 27. 이 사건 학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원고가 기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과 동일한 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이 사건 처분)하였다.[3)]

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사. 전심절차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7. 기각되었고, 2018.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 11, 12, 14, 16,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학교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위법하다.

가. 주장 ① : 이 사건 학교건물은 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국제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구 [redacted]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5. 12. 31. 조례 제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취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기대는 정당하여 보호받아야 하므로, 비록 그 취득이 개정 전 조례의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인 [redacted]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부칙(제1526호, 2015. 12. 31.) 제3조에 의하여 개정 전 조례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주장 ② : 이 사건 학교건물은 원고가 E 입주기업으로서 감면목적사업인 국제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 시 조례 제24조의2 제1항,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취득세 등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제57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85%가 면제되어야 한다.

다. 주장 ③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학교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4.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2022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나. 판단

2015. 12. 31.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1526호로 개정된 [redacted]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규정인 개정 전 조례 제24조 제1항을 삭제하면서 그 부칙 제3조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redacted]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전 조례 제24조 제1항은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여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을 뿐 위 조례 개정 전에 원인행위가 있기만 하면 개정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과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개정 전 조례의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부칙 제3조는 개정 전에는 원인행위만이 있었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조례 제2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부칙 조항을 개정 전에는 원인행위만이 있었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조례 제2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개정 전 조례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조항이 개정된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학교용지의 취득으로부터 건축허가 취득, 착공에 이르는 일단의 원인행위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0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 조례 개정 후인 2016. 5월 비로소 이 사건 학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원고가 개정 전 조례의 시행 당시 이 사건 학교건물의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학교건물의 취득에 개정 전 조례 제24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①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위 조항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건물을 국제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아래 5.항에서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하여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개정 전 조례 제2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5.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 학교건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학교건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취득 시 조례 제24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직접 사용'이란 그 사용 주체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국제학교 운영주체인 F에 임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교건물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국제학교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체 또한 원고가 아닌 F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학교건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를 다수 사용하면서도 그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여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그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인적 감면), 아니면 제3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에게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물적 감면)에 대하여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는데,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4]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4) 지방세법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의 위 각 조항은 지방세 감면의 수혜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만일 해당 부동산 등을 사용하는 자가 소유자가 아닐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을 뿐 그 자신이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경우까지 조세를 감면하지는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규정된 것이고, 취득 시 조례 제24조의2 제1항의 취지 역시 이와 다르지 아니한 점, 관계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체계적·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 시 조례 제2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개정 전 조례 제24조 제1항에 정한 직접 사용도 마찬가지이다)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의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은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것이 과세요건법정주의에 합치하는 해석이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F가 원고의 완전자회사로 사실상 원고와 동일한 법인이고 공기업인 원고가 법령상 학교법인을 운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F에게 이 사건 학교건물을 임대하여 이 사건 국제학교의 운영을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득 시 조례 제24조의2 제1항의 문언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가 E '입주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시 조례 제24조의2 제1항은 H지구에 2018. 12. 31.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원고는 자신이 H지구인 E의 개발사업시행자이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 못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입주기업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발사업시행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입주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사건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주체가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F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E 내에 사업장을 갖추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입주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E 입주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학교건물의 취득에 있어 취득 시 조례 제24조의2의 감면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②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학교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그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 주더라도, 이는 결국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내지 오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신고·납부 의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③도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별지]

관계 법령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H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H지구(이하 "H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H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H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H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H지구의 주요사업내용

③ H지구는 A가 이를 관리한다.

④ H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H지구의 지정)

① 법 제2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같은 항에 따른 H지구(이하 "H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7. 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법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및 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② 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A이거나 A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H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H지구(이하 "H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0. 6. 9. 대통령령 제3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H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② 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A(이하 "A"라 한다)이거나 A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5. 12.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H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 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8. 7.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H지구(이하 "H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24조의4(A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A(이하 이 조에서 "A"라 한다)가 같은 법 제17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0을 각각 경감한다.

제5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에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세: 200만원 이하
2.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부칙(제1526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개정규정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의 개정부분, 제24조의3의 개정규정 중 "특별법 제163조" 및 "특별법 제162조"의 개정부분,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 중 "특별법 제122조"의 개정부분, 제51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 중 "특별법 121조"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5

(각 호 생략)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각 호 생략)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각 호 생략)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끝.